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급여 비용부담 비율

(제18조제1호 관련)

구분			국가	지방자치단체		
				일반회계	교육비 특별회계	
생계비·아동양육비 (법 제12조제1항제1호·제4호 관련)			특별시의 경우	50%	50%	
			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	80%	20%	
아동 교육 지원비 (법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)	입학금 · 수업료	국립 고등학교	특별시의 경우	50%	50%	
			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	80%	20%	
		공립·사립 고등학교	특별시의 경우		50%	50%
			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		20%	80%
	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		특별시의 경우	50%	50%	
			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경우	80%	20%	